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이었던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09명”을 “107명”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공공윤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윤리정책과를 둔다.

② 공공윤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10. 윤리경영·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고등학교 졸업출신자·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여성·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4.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 ④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공공혁신기획과) 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혁신기획과를 둔다.

② 공공혁신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이행점검 및 지원
2. 공공기관의 협업(協業)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지원
4.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평가 및 후속조치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보급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0. 공공기관의 투명·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④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75”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32”를 “1,02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제목 중 “(제32조제4항,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 관련)”을 “(제32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윤리정책과(존속기한: 2024년 9월 3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이하	6

6. 공공혁신기획과(존속기한: 2024년 9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0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경제구조개혁국 1개 과	5명
2) 예산실 1개 과	6명
3) 개발금융국 1개 과	4명
4) 경제구조개혁국 1개 과	4명
5) 예산실 1개 과	4명
6) 미래전략국 1개 과	5명
7) 세제실 1개 정책관등	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09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u>107명</u> 을-----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4조(공공윤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윤리정책과를 둔다.</u>
	<u>② 공공윤리정책과에 과장 1명</u>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 9의2. 윤리경영·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고등학교 졸업 출신자·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 11. 여성·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 1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 13.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신 설>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4.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
원

④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공공혁신기획과) ① 기
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혁신기
획과를 둔다.

② 공공혁신기획과에 과장 1명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
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
이행점검 및 지원

2. 공공기관의 협업(協業) 활성
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 · 지원

4.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 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 · 평가 및 후속조치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 · 선정 · 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 · 보급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0. 공공기관의 투명 · 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및 방만경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u>제34조</u> (생 략)	<u>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u> <u>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u> <u>리 및 지원</u> <u>④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u> <u>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u> <u>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u>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 <u>제35조</u> (현행 제34조와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5</u>	<u>1,075</u>	-10
•	•	•	
•	•	•	
일반직 계	<u>1,074</u>	<u>1,064</u>	-1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32</u>	<u>1,022</u>	-1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